



[2014.1.1] [25050 , 2013.12.30,]

() 044 - 201 - 6865

1

1 () 「 」 .

2 () 「 」 (" ") 8 4

(" ")가 . < 2013.1.31 >

8 4 「 」 12

. < 2012.7.20 >

8 4 ,

8 4 , . ,

. < 2013.1.31 >

1. :
2. : ,
3. : ,

2 2(가) 9 2

가 3 .

- 1.
2. 「 」
3. 「 」 (" ")
4. 가
- 5.

가

1. 가 .
- 2.
3. .
- 4.
5. 1 4 가, 「 」 4
- 6.

가

3 2 3 가 가

[< 2013.1.31 >

2 3(가) 가 가

2.
3.

1

2 , 1
1 ,
가 .

7 () 1 . ,
.

7 2(가) 14 5 가 (" 가 ")
(" ") 1 25 .
, 가
(" ") .

1. 가 1
2.
[[2013.1.31](#)]

8 () ,
가 .
1. : 가
2. : .
[[2013.1.31](#)]

9 () ,
가 .
1. , 가가
2. , 가가 가
[[2013.1.31](#)]

10 () , 가
[[2013.1.31](#)] . < [2013.1.31](#) >

2

11 (가) 23 1 가
[[2012.7.20](#)]
1.
2. 「 」 38 . (" ")
1 5

23 1 1 가 .
23 1 가
[[2013.1.31](#)] .

1. () (가)

2.

3. (一般圖)

4.

5. (41 3)

6. 가 (가)

23 2

"

"

1.

가. 가(가) 23 2 : 가

100 50

: 가

100 30

2.

23 2

가

가

가

가 가 . < 2013.1.31 >

12 () 23 6 가

. < 2010.12.31, 2013.1.31 >

1.

가 10 가 가 2 25

2.

(가 10)

(22)

[2013.1.31]

13 () 25 2 1

14 () 26 1 " "

1.

16

2.

가 가

15 (가) 30 1 " (

" 가 100 20)

)

16 () 30 2 " "

1.

(排煙脫黃施設)

2.

(排煙脫室施設)

3.

17 () 가 32 1 2

1. (積算電力計)

2. { (流量・流速計), }
32 1 가 「 」 2
()

.< 2013.1.31 >

32 1
. < 2013.1.31 >

1 1 2 .< 2013.1.31 >

1 2 1 1 3
(猶豫) 3
. < 2013.1.31 >

32 7
(" ") 35
가
. < 2013.1.31 >

18 () 32 5 6
. < 2013.1.31 >
1 가 1
가 6 . < 2013.1.31 >

19 () 32 7 ()
" ") . < 2013.1.31 >

20 () 33
1 . < 2013.1.31 >
33 1
. < 2013.1.31 >

21 () 32 5 ()
() 33
15 ()
가
. < 2013.1.31 >

1. 32 5
가.

가

2. 33

가. 33

가

(工法)

가 1

1

가

1. 32 5

가 가

3

30

30

5

("30 ")

2. 33

32 5

.< 2013.1.31 >

1.

2.

3.

, 가

33

가

.< 2008.12.31, 2013.1.31 >

1.

2.

3.

4.

, 가

22 ()

32 5

33

.< 2013.1.31 >

1

가

(試料)

.< 2013.1.31 >

23 ()

35 2 1

.< 2013.1.31 >

1.

2.

35 2 2

(" ")

.< 2013.1.31 >

1.

2.

3.

4.

5.

- 6.
- 7.
- 8.
- 9.

24 () 23 1

- 1. 21 4 : 1 x
- 2. 1 : 1 x x
- 1 x x x
- 1 1 ,
- 4 .

25 () 24 1

(" ")

(日數)

- . , 17 1 2
- (" ") 30 가
- 30 (30
-) 30 , (半期別)

- 1. 21 4 :
- 2. 1 : (33 , 34 38 ,
- , 36 가 ,
- 1 33 , 34 , 36 38 ,
- , 가 , (21 4
-) 가 (" ") 가 (
- " ")
- 2 5 , 「 .
- 」 6 1 1 .<

[2008.12.31 >](#)

24 1 가 1

1 ,

1 3 .

1 23 2

3 가 30

5 2 .< [2010.12.31 >](#)

1 , 「 」 , (初日) .<

[2010.12.31 >](#)

26 () 24 1
가 가
24 1
1. : 100 100
2. : 100 105
3. 2 : 100 105
2 23
33 , 34 , 36 38 , 가 ,
가 2
3 30 가
, 30 가 24 2 1 , 21
3 1
23 1 3 . <

[2010.3.26 >](#)

27 () 35 2 1
25 1
6 . < [2013.1.31 >](#)
[[2008.12.31](#)]

28 () 35 2 1
(" ") 1 , ,
. < [2013.1.31 >](#)
1 1 24 2
, 7 , 8 .
1 1 ,
가 가

29 () 28 1
82 1
(" ")
30 . < [2013.1.31 >](#)
9 ,
21 3 가 2
가 가 3 30
1

30 () 가 29
. < [2013.1.31 >](#)
1. 가 29 1 :
1 24

2. 가 ()

3. 가 29 1 가 :

, 100 120

31 () 가
가 30

82 1 . < 2013.1.31 >

31 2() 35 8 가 가
35 가 100 10 .

. < 2013.1.31 >

「 」 가 1

[37 <2013.1.31 >]

32 () 35 2 1 1

. , 1 2 1
2 1

2 . < 2013.1.31 >

1. 0.3 , (

100 가) 0.5
0.45 .

2. (附生)가 0.05 가

3. 1 2
35 2 1 1 가 가

. < 2013.1.31 >

35 2 1 2 "

"

. < 2013.1.31 >

35 2 1 3

. , 「 」 2 2

. < 2008.9.22, 2013.1.31 >

35 2 2 1 " " 32 1

「 」 2 1 4 5

. < 2013.1.31 >

35 2 . <
2013.1.31 >

33 () 가 (30 가

60) ,

60

· (35 3) ,
, 30 .< [2013.1.31](#)>

34 () 35 3 1 " " .< [2013.1.31](#)>

1. 25 1 가 , ,

2. 가 ,

3. 가 가 30

1 1 22 1

1 2

1 1

, , 30 .< [2013.1.31](#)>

1 3

가,

, 39 1 가 82 23 1 3 31 2

· 35 3 1 , , , .< [2013.1.31](#)>

35 () (" ") 34 1

1 60 .< [2010.12.31](#)>

· 30 .< [2013.1.31](#)>

1

36 () 35 4 1 2

35 4 1

1. : , 4

2. : 2 , 12

35 4 2 3 ,

18

· 가 .

[[2013.1.31](#)]

37

[31 2 <[2013.1.31](#)>]

38 () 37 1 " "

1.

2.

가 가

3. (鎔融)

38 2() 38 2 " 「 」 22

1. ,

2. , ,

3. 1

[[2013.1.31](#)]

39 () 40 1 가

1. 가 . < [2013.1.31](#) >

2. 가 5 , 1 2

30 10 4 • 5

40 1

10

3

40 () 41 1 (" ")

(" ") 10 2 . < [2008.12.31](#) >

41 4 • 10 2

. < [2008.12.31, 2013.1.31](#) >

2

5

. < [2013.1.31](#) >

1.

2. ,

3.

<[2013.1.31](#)>

41 () • 40 1

1. 32 1 2 가

2. 32 3
3.

23 가 가

42 () 42
11 2
3 가 . < 2008.12.31 >

- 1.
- 2.
- 3.
- 4.

가 가

1

- 1.
- 2.

(燒成爐)

3. 「 」 2 ()
4. 1

2 4 가

43 () 42 40 42

11 3

가 가 (" ") . <

2008.12.31 >

「 」

가

11 3

. < 2008.12.31 >

44 () 43 1 " "

- 1.
- 2.
- 3. 1
- 4.
- 5. (,)
- 6. , , , ,
- 7.
- 8. (貯炭施設) 가
- 9. , , ,

가

가

10. 가

45 () 44 1 " " . < 2013.1.31 >

1. (出荷施設)

- 2.
- 3.
- 4.
- 5.

1 45 4 " " . < 2013.1.31 >

1. . . . (50 50)

4 . 가

46 (가) 46 1 " "

1. , 가 가.

2. 가.

(粒子狀物質)

47 (.) 48 1 . < 2008.12.31, 2010.3.26, 2013.3.23 >

- 1. 가
- 2. 가
- 3.
- 4. , 가 가
- 5.
- 6.

7. <2008.12.31>

8. 1 (住居) 1

48 1

.< 2008.2.29>

1. 가

2.

3. 가

4.

5. 48 1 가

6.

7. 가

47 2() 48 4 2 .

1. 84 1

2. 1 1 20 .

48 2 2 6

[2013.1.31]

48 () 50 1

1. : 가

2. : 가 (臺

數)

1

49 () 50 2 48 1 2

50 () 53 1

가 30

.< 2012.5.22>

1. 가 40

2. ("

") 2

53 1

가

90

.<

2012.5.22>

1. 가 50

2. 4

1 2 가

1 2

51 () 53 2

.< 2012.5.22>

1. ()가 50
2. 가 4
1 가
- 52 () 56 2
12
- 53 <2013.1.31>
- 54 (가) 63 1 2 " "
. < 2013.1.31>
1. , ,
2. , , ,
- 55 <2013.1.31>
- 56 () 68 1 가 (" ")
가 13
[2013.1.31]
- 57 () 68 1 " "
1.
2.
3.
4.
5. .
[2013.1.31]
- 58 <2009.6.30>
- 59 <2009.6.30>
- 60 () 76 1 " "
- 5
- 61 (.) 81 3
1.
2.
12 31
2
- 62 () 83 8 " " . <
2009.6.30>

- 1.
- 2.
- 3.
- 4.

• • 가

63 () 87 1 • . <

[2009.6.30, 2013.1.31 >](#)

1. <2013.1.31 >
2. <2013.1.31 >
3. <2013.1.31 >
4. <2013.1.31 >
5. <2013.1.31 >
6. <2013.1.31 >
7. <2013.1.31 >
8. <2013.1.31 >
9. <2013.1.31 >
10. <2013.1.31 >
11. <2013.1.31 >
12. <2013.1.31 >
13. <2013.1.31 >
14. <2013.1.31 >
15. <2013.1.31 >
16. <2013.1.31 >
17. 70
18. 70 2

87 1

. , 1 3

.<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

1. 3 1 ()
2. 4 1 • •
3. 5 1 (1)
4. 19 3 5 • 가
5. 74 4 가 •
6. 75 1 2
- 6 2. 82 1 5 2 , , , ,
7. 82 1 11 , , , ,

87 1

.<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

1. 3 1 ()
2. 5 1 (1)

- 66 2() 3 (3)
1. 11 가 : 2014 1 1
 2. 17 1 3 : 2014 1 1
 3. 28 , 7 8 : 2014 1 1
 4. 39 10 : 2014 1 1
 5. 40 10 2 : 2014 1 1
 6. 43 11 3 : 2014 1 1
 7. 54 가 : 2014 1 1
 8. 56 13 : 2014 1 1
- [[2013.12.30](#)]

- 66 3() (63 66) .
), . . (.
) 가 「 」 19 1 , 2
 4 , 가 . <

[2013.1.31 >](#)

1. 48 가
2. 48 2 48 3
3. 50
4. 51 53
- 4 2. 61 1 가
5. 68 가
6. <[2013.1.31](#)>

[[2012.1.6](#)]

- 67 () 94 1 3 15 . <

[2013.1.31 >](#)

[[2008.12.31](#)]

< 25050 ,2013.12.30 >

2014 1 1 . < >

[별표 1] <개정 2008.12.31>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종 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3.1.3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적산전력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착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3.1.3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제17조제5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부착대상 배출시설 | 측정항목 |
|---|--|
| <p>가.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p> <p>코크스 또는 관련 제품 제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크스 제조시설 중 황 회수 제조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p> |
| <p>나. 석유제품 제조시설</p> <p>1)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p>2) 촉매 재생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p> <p>황산화물</p> <p>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p> |
| <p>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p> <p>1)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p>2) 촉매 재생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3) 탈황시설 또는 황 회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4)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제조 또는 황 회수시설을 제외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p> <p>황산화물</p> <p>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p> |
| <p>라.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p> <p>1) 황산 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p> | <p>황산화물</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황산을 제외한 무기산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산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인광석 소성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불화수소</p> <p>불화수소</p> <p>염화수소</p> <p>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p>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
| <p>마.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
| <p>바.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p> <p>1) 화학비료 제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질소질비료(요소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복합비료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2) 질산 제조시설 또는 질산 회수재생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3)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암모니아</p> <p>먼지, 암모니아, 불화수소</p> <p>질소산화물</p>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
| <p>사. 의약품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 <p>먼지, 질소산화물,</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황산화물 |
| <p>아.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p>자. 화학섬유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p>차.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p>카.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p>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p> <p>1) 유리(유리섬유를 포함한다)제조 용융·용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pot)로가 아닌 시설로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2)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합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염화수소 |
| <p>파.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 시설을 포함한다]</p> <p>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 <p>하.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p> | |

| | |
|---|---|
| <p>1)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2) 석회 제조시설의 소성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만 해당한다), 염화수소(폐합성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한다)</p> <p>먼지, 질소산화물</p> |
| <p>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p> <p>1) 소성시설 및 용융·용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2) 석고 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 질소산화물</p> |
| <p>너.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p> <p>용융·용해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
| <p>더. 제1차 금속 제조시설</p> <p>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2) 소결로(燒結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3) 가열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4) 용광로, 용선로, 전로, 용융·용해로 또는 배소로(焙燒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p>5)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 <p>먼지</p>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용선로 및 배소로만 해당한다)</p> <p>염화수소</p>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p> |
| <p>러.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가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전로, 용융·용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p>먼지</p>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먼지, 황산화물</p> <p>염화수소</p> <p>먼지</p> <p>염화수소</p> |
| <p>머.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또는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인 시설 2) 발전용 내연기관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p> <p>질소산화물</p> |

| | |
|--|---|
| <p>가) 액체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 발전용량 5,000킬로와트 이상</p>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p> |
| <p>버.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p> <p>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처리업을 포함한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4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p> <p>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p> <p>3) 폐가스 소각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4)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p> <p>5) 폐수 소각시설 -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p> | <p>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p> |
| <p>서.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 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2,476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p> | <p>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
| <p>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시설. 다만, 소각시설은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에 한정한다.</p> | <p>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p> |
| <p>저.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한다)</p> <p>1)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2) 증발시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p> | <p>먼지 먼지</p> |

| | |
|--|-----------------|
| 이상인 시설 | |
| 처.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가열용량이 시간당 2,5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비고

1.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2. 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 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부착대상 배출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증착·식각시설 및 산처리시설의 “연속식” 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나. 주물사처리시설·탈사시설·탈청시설의 “연속식” 이란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로서 시설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다. 폐가스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라. 증발시설 중 진공증발시설 및 배출가스를 회수하여 응축하는 시설은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 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한다)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마.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바.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 다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에 한한다.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고: 각 목의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글썽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3. 글썽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가. 글썽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
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글썽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
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규모변경"이라 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글썽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
여야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글썽자동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1)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글썽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에는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
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
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
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글썽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글썽 자동측정기
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
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글썽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 별 부과 계수 | | | | | | | | 지 역 | |
|----------------------------|------------------------|---------------------|------------------|------------------|-------------------|--------------------|--------------------|--------------------|---------|--------|---|
| |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
| 황 산 화 물 | 5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먼 지 | 77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암 모 니 아 | 1,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황 화 수 소 | 6,0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이 황 화 탄 소 | 1,6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특 정 유 해 물 질 | 불소화합물 | 2,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염 화 수 소 | 7,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염 소 | 7,4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 | 시안화수소 | 7,300 | 1.2 | 1.56 | 1.92 | 2.28 | 3.0 | 4.2 | 4.8 | 5.4 | 2 |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
3. 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 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별표 5의2] <신설 2010.12.31>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text{초과배출량공제분} = (\text{배출허용기준농도} - \text{3개월간 평균배출농도}) \times \text{3개월간 평균배출유량}$$

비고

1.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공제분으로 한다.

[별표 5]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 3항 관련)

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 구분 | 오염물질 | 산정방법 |
|----------|--------|---|
| 일반오염물질 | 황산화물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64 \div 22.4$ |
| | 먼지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
| | 암모니아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17 \div 22.4$ |
| | 황화수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34 \div 22.4$ |
| | 이황화탄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76 \div 22.4$ |
| 특정대기유해물질 | 불소화합물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19 \div 22.4$ |
| | 염화수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36.5 \div 22.4$ |
| | 염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71 \div 22.4$ |
| | 시아니화수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27 \div 22.4$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Sm^3)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3/h)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별표 6] <개정 2008.12.31>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 반 기 별 | 부과기준일 | 부 과 기 간 |
|-------|------------|---------------------|
| 상 반 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 하 반 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비고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 구 분 | 지 역 별 부 과 계 수 |
|--------|---------------|
| I 지역 | 1.5 |
| II 지역 | 0.5 |
| III 지역 | 1.0 |

비고 : I, II, III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4 비고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1.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분 | 연료의 황함유량(%) | | |
|----------|-------------|---------|---------|
| | 0.5%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
|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

2. 제1호 외의 시설

| 구 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
| |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 구 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
|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 농도별 부과계수 | 0.5 | 0.65 | 0.8 | 0.95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frac{\text{배출농도}}{\text{배출허용기준농도}} \times 100$

2.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별표 9]

측정결과에 따른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1. 황산화물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먼지의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frac{\text{일일배출량의 합계}}{\text{자가측정횟수}}$$

2)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frac{1)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 + \text{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1 + \text{검사횟수}}$$

나.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비고 :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5 나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 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2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구 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
|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

가. 경유(황합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합유량 1.0%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황합유량 0.5% 이하 및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황합유량 0.5%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 시·도별 | 공급·사용지역 |
|-------|---|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 경 기 |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
| 강 원 |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충 북 |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 충 남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
| 전 북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 전 남 |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부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
| 경 북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
| 경 남 |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3) 황합유탕 0.3% 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 시·도별 | 공급·사용지역 |
|-----------|--|
| 특별시 및 광역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 경 기 |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파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 강 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 충 북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 충 남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
| 전 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전 남 |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 경 북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
| 경 남 |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

비고

1. 황합유탕 0.3% 이하 중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2.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는 황합유탕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합유탕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는 나목을 준용한다.

라.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별표 11] 삭제 <2013.1.31>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비고: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황합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합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합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합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합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 환경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황합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가.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의2] <신설 2008.12.31>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 대상지역 | | 보일러 용량의 합 | 사용연료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 · 2톤 이상 · 0.2톤 이상 2톤 미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평택시·오산시·용인시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전남권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 (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 |
|-----|-----------------|-----------|------------|
| 권 | | |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대상지역 | 구분 | 전 용 면 적 | 사용연료 |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 · 82.6㎡ 이상 · 40.0㎡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 기존 | · 82.6㎡ 이상 · 59.5㎡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
| | | | ·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울산광역시, 양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구미시, 포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 청정연료 또는 |

| | | |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경유 |
|-----|------------------------------|----|--|------------|
| 전남권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전북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비고: 1.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2.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도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도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황황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황황스유(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황황산화물(LSWR)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황황산화물(LSWR)나 B-C유(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비고: 저황황산화물(LSWR)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1996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겸용버너의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2]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정도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작 차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행위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가중부과계수를 적용한다.

|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
|--------|---------------------------------|---------------------------------------|
| 가중부과계수 | 1 | 0.5 |

3. 과징금 산정방법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제56조 관련)

1. 정비·점검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장비 | 휘발유·가스 분야 | 경유 분야 |
|--|-----------|-------|
| 1) 리프트 또는 피트 1조 이상 | ○ | ○ |
| 2)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 ○ | |
| 3)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 | ○ |
| 4)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 ○ | |
| 5) 교정용 표준가스 5조(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이상 | ○ | |
| 6)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 | ○ |
| 7) 그 밖에 정비·점검에 필요한 공구 | ○ | ○ |

비 고

- 배출가스 측정기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 분야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정한다.
- 휘발유·가스 분야와 경유 분야를 모두 등록하려는 자,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 자 격 | 확보기준 |
|--|-------------------|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 | 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 |

| | |
|---|--|
|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씩 확보하여 2명 이상이거나, 1)과 2)의 어느 하나에서 2명 이상 |
|---|--|

2. 확인검사 분야

가. 시설 및 장비

| 구 분 | 시설 및 장비 |
|----------|---|
| 정밀검사지역 |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5)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6)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7) 엔진회전 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8) 검사 장면 촬영용 카메라 9) 매연 포집시설 10)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11)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정밀검사지역 외 | 1)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각 1조 이상 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3조(40%·60%·80%) 이상 |

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5)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 구분 | 자 격 | 확보 기준 |
|----|---|-------------------------------|
| 전국 |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1)과 2)에서 각각 1명 이상씩 확보하여 2명 이상 |
| |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 |

비 고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정밀검사 지역: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정밀검사 지역 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정밀검사 지역 내 전문정비사업자의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

[별표 14] 삭제 <2009.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파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 반 사 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가.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호 | 100 | 100 | 100 |
|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1호의2 | 60 | 80 | 100 |
|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1호 | 200 | 200 | 200 |
|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2호 | 100 | 140 | 200 |
| 마.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3호 | 200 | 200 | 200 |

| | | | | |
|--|-----------------|-----|-----|-----|
| 바.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4호 | 200 | 200 | 200 |
| 사.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5호 | 200 | 200 | 200 |
| 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1항 | 300 | 300 | 300 |
| 자.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2호 | 60 | 80 | 100 |
| 차.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합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6호 | 200 | 200 | 200 |
| 카.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합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6호 | 100 | 140 | 200 |
| 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7호 | 120 | 160 | 200 |
| 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3호 | 100 | 100 | 100 |
|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3호 | 60 | 80 | 100 |
| 거. 법 제44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8호 | 60 | 80 | 100 |
| 너.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8호의2 | 200 | 200 | 200 |
| 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3호의2 | 100 | 100 | 100 |
| 러.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3항제3호의3 | 100 | 100 | 100 |

| | | | | |
|--|-------------------------|------------|------------|------------|
| <p>머.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2항제9호</p> | <p>100</p> | <p>150</p> | <p>200</p> |
| <p>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합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2항제10호</p> | <p>100</p> | <p>150</p> | <p>200</p> |
| <p>서.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p> | <p>법 제94조 제3항제5호</p> | <p>5</p> | <p>5</p> | <p>5</p> |
| <p>어.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p> | <p>법 제94조 제2항제10호의2</p> | <p>100</p> | <p>150</p> | <p>200</p> |
| <p>저.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3항제6호</p> | <p>60</p> | <p>80</p> | <p>100</p> |
| <p>처.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p> | <p>법 제94조 제3항제6호의2</p> | <p>60</p> | <p>80</p> | <p>100</p> |
| <p>커.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2항제11호</p> | <p>100</p> | <p>150</p> | <p>200</p> |
| <p>터.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3항제7호</p> | <p>60</p> | <p>80</p> | <p>100</p> |
| <p>퍼. 법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p> | <p>법 제94조 제2항제13호</p> | <p>100</p> | <p>150</p> | <p>200</p> |
| <p>허.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94조 제3항제8호</p> | <p>60</p> | <p>80</p> | <p>100</p> |
| <p>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 <p>법 제94조 제3항제9호</p> | <p>60</p> | <p>80</p> | <p>100</p> |